



환 · 경 · 관 · 리 · 질 · 의 · 응 · 답

별표2 제2호에따른 시설규모미만공정(단위시설) 추가 또는 폐쇄 시 변경신고대상여부

Q

악취배출시설변경신고 대상을 명확히 알고자 문의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2.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별표2 제2호에 따른 시설규모의 기준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후 시설규모의 기준미만의 시설이 추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ex) ① 34.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중 동력25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에 대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후 동력100마력의 성형시설이 추가될 경우 ② 23.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중 용적 1m³ 이상의 반응시설에 대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후 용적0.5m³의 반응시설이 추가될 경우

A

성형시설(250마력이상)을 포함하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에 대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후 동력 100마력의 성형시설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추가하는 시설로 인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은 항상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악취방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종류

Q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쓰레기일부포함)은 폐토사인지 아님 폐토석인지 건설폐기물에는 폐토사라는 말이 없고 그냥 토사라고만 있던데 폐토사라는 말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상은 80프로 이상 흙 나머지 쓰레기입니다. 적정처리 및 해당여부 좀 부탁드립니다.

A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하며, 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은 건설폐토석(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됩니다.

토양오염도검사

Q

당사는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얼마전 특정토양오염대상시설 50,000 리터 탱크를 증설하였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시행규칙 12조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증설도 포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토양오염대상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로 설치할 때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A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증설된 경우에도「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정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방지시설 운영 여부

Q

대기쪽 방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우선 대기방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크게 방지시설운영일지와 자가측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배출시설이 비가동될 경우 운영일지 및 자가측정 실시여부 문의드립니다.

(허가는 유지중이며, 저장시설 및 도금시설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미가동임.)

이 경우의 적법한 관리방법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 운영일지-비가동작성, 자가측정-미실시 등)

A

(1)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다 하여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제1호 비고란에 가동여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측정 주기(횟수)내에서 배출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자가측정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규배출시설의 총량자료

Q

당사는 소각시설 1.95t/hr을 폐기물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 가동개시신고일 : 2008. 02. 13.



2. clean sys부착완료일 : 2008. 02. 29.

3. 통합검사 완료일 : 2008. 04. 10.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clean sys부착완료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clean sys자료를 행정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장은 총량사업장으로서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3월까지의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clean sys부착완료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08. 05. 29부터 clean sys자료를 사용해야하는지, ② 아니면, 통합검사 완료일이후인 2008. 4. 11부터 clean sys자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부칙 제2조(측정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중 2007.7.1. 이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령 별표2의2 규정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정도검사 및 상대정확도 시험 포함)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 행정자료로 활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가동개시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전송되는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배출량 산정은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07-103호)에 따라 배출계수, 단위배출량, 자가측정결과를 기준에 따름을 알려 드립니다.

표준설계도

Q

1. 퇴비사를 지을 때 허가받은 업체에서 시공을 해야 하거나 표준설계도에 따라 퇴비사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표준설계도를 구해보니 1999년도 것 밖에 없네요. 혹시 그 이후에 나온 것 있으면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2. 그리고 직접 지을 경우에도 도면을 제출해야 되는건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피 설계해주는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건데 표준설계도대로 시공할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표준설계도를 보니 톱밥발효우사일 경우 퇴비사만 지으면 되고 퇴비저장시설은 안지어도 되는데 시공업체에서는 퇴비저장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1999년도 표준설계도 대로 그냥 퇴비사만 지으면 안될까요?

A

1999년에 발간된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이후에 새로 발간된 표준설계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설계도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에서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출시설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규정에 의하면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때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비저장시설 규모와 관련한 별도의 용량 계

산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설치규모는 퇴비화시설의 공법, 퇴비생산량, 생산된 퇴비의 처분방법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UV램프처리

UV램프(수은포함됨) 건조기가 설치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램프처리를 현광등재활용협회에 문의해서 재활용을 의뢰하였으나, 저희공장의 램프의 길이가 일반 현광등 길이보다 커서 처리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할 경우,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소각업체의 경우 소각로에 유리가 용융되어 로의 손상이 있어, 처리를 꺼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립을 하려합니다. 매립을 해도 무방한지요?

또한 폐램프 이동시에 주의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수은이 대기중으로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깨지지 않도록 수집 운반을 해야하는것인지요?

폐램프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처리할 수 있으며, 폐램프에 대한 수집·운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동과정에서 외부로 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내의 발생하는 물

건설현장에서 품질시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위해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하여 28일간 수침후 압축강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도 시험 종료 수조내의 물을 방류 및 처리를 해야하는데 수조내의 물의 pH가 10.7(통상 pH9~pH사이) 정도 나옵니다.

1. 이런 경우 그냥 방류가 가능한지요?
 2. 그렇지 않다면 중화후 방류해야 하는지요?
 3. 중화하는 방법은 물을 추가로 투입해서 중화시켜도 되는지요?? 아님 약품을 써야하는지요?
 4.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약품을 이용해서 중화후 별도의 조치없이 그냥 방류해도 되는지요?
- 그리고 이에 따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멘트 등이 혼합된 더러워진 물은 폐수에 해당되며 그 발생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82번 그 밖의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상기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수소이온농도가 2.0~12.6에 해당되지 않음)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폐기물(폐산 또는 폐알카리)로 처리하여야 귀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㉔